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0
----------	-----

2019. 3. 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31일 이상훈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3.6.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에서와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형에서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사회주택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회주택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의 관심

과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자문 또는 심의로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15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와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를 신설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안 제18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주택 위원회”의 기능 및 당연직·위촉직 위원의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주택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이상훈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확대(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현행 조례상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회경제

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무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 기능이 추가되었음.

- 이에 덧붙여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는데, 이는 사회주택공급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인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회주택 지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위원회 심의대상 관련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3.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3.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개정(안 제17조제2항 및 제4항~제6항)

-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2016년 12월 최초 설치¹⁾하였으나, 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단 한 차

1) 현재 서울시 관계부서 국장 6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상임이사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9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임.

레도 없었음.

- 이는 위원회를 개최할 심의안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인 상황임에도 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이나 위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일체 심의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주택공급과에서는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안건이나 자문사유 발생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구성관련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 분	현 행	개정안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2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당연직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주택·경제·복지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 •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임이사 •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장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 청년허브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삭제)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관 본부장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장 (삭제) • (삭제)
위촉직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 주거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사무관

- 이상의 배경에서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상황

임에도,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일부 변경하고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포함된 상황에서, 당연직 위원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센터장이 자신의 센터를 자체 심의·자문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안건의 심의·자문시 제척 또는 강제 회피토록 할 수도 있으나,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 (안 제18조제2항)

- 안 제18조제2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정상²⁾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최대 4년 이내로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는 특정한 위촉직 위원이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참고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³⁾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

2) 제18조(위원의 임기)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도록 하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위원회 회의소집(안 제20조제1항제1호)

- 안 제20조제1항제1호는 위원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주체를 ‘시장’에서 ‘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미 같은 조문에서 위원장의 소집 요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이 조문의 개정 실익은 없다고 보여짐.

□ 결론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서울시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⁴⁾에서도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공적임대주택의 대표유형인 사회주택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급 확대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지원제도와 관련한 중요 안건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2.19):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 다만,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대상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재계약을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장을 위촉직 위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위원 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존재하는 바, 이해충돌이 발생 하지 않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80
----------	-----------

제안일자 : 2019. 3. 6.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의결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수정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중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장을 삭제한다(안 제17조 제4항).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위촉해제 규정을 각각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으로 신설한다.
- 안 제20조제1항제1호를 현행과 같이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4항 중 “본부장,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를 “본부장으로”로 한다.

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위원의 해임·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20조제1항제1호 중 “위원장”을 현행과 같이 “시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p>제17조(위원회의 구성)</p> <p>④ <u>당연직 위원은 혁신·도시·주택·경제·복지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임이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청년허브의 장으로 한다.</u></p>	<p>제17조(위원회의 구성)</p> <p>④ <u>당연직 위원은 주택·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관 본부장,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u></p>	<p>제17조(위원회의 구성)</p> <p>④ ----- ----- ----- ----- 본부 <u>장으로-----.</u></p>
	<p><신 설></p>	<p>제17조의2(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p> <p>① <u>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u></p> <p>② <u>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③ <u>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u><신설></u></p>	<p><u>제17조의3(위원의 해임·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u> <u>2. 위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u> <u>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현행	개정안	수정안
		<u>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p>제20조(회의 등)</p> <p>① (생략)</p> <p>1. <u>시장</u>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p> <p>2. ~ 3. (생략)</p> <p>② (생략)</p>	<p>제20조(회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u>위원장</u>-----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회의 등)</p> <p>① (개정안과 같음)</p> <p><u>1. (현행과 같음)</u></p> <p>2. ~ 3.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자문 또는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한다”를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 중 “행정2부시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제17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

제17조제6항 중 “주택정책과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위원의 해임·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제2항 본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 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u>심의</u> <u>하기</u>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 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u>사항을</u> <u>심의한다</u>.</p> <p>1. ~ 3. (생 략) <u><신 설></u></p> <p>4. (생 략)</p> <p>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u>행정2부시장이 되고</u>, 부위원장은 <u>위원 중에서 호선한</u> 다.</p> <p>③ (생 략)</p> <p>④ <u>당연직 위원은 혁신·도시·주</u> <u>택·경제·복지 분야 등 관련 부</u> <u>서 국장,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u> <u>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u> <u>공무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임</u></p>	<p>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u>자문 또는 심의하</u> <u>기</u> ----- -----.</p> <p>② ----- <u>사항을 자</u> <u>문 또는 심의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 <u>4.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u> <u>의 제·개정</u>에 관한 사항 <u>5. (현행 제4호와 같음)</u></p> <p>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u> <u>명 또는 위촉하고</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당연직 위원은 주택·사회적경</u> <u>제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u> <u>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관 본부장</u> <u>으로 한다</u>.</p>

이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청년허브의 장으로 한다.

⑤ (생략)

1. (생략)

2. 주거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3. ~ 4. (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신설>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3.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⑥ -----
----- 담당 사무관-----
--.

제1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위원의 해임·위촉해

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2년-----

-----.